

WTO, 미국 농산물무역정책 검토결과 발표

김 상 현*

최근 WTO는 미국의 8번째 무역정책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WTO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투명한 무역정책과 시장개방을 유지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면, 무역장벽과 무역왜곡 보조 등을 통한 보호주의 정서를 경계하고, 꾸준한 시장개방을 유지하도록 촉구했다. 여기서는 미국 농업부문의 무역정책에 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한다.

1. 농업개황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인 동시에 수출국이며, 수입국이다. 2004년 농산물의 평균 양허세율은 9.7%임.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이 시행된 이후 경기조정 직접지불(counter-cyclical payments, CCP) 과 융자지원 직접지불(loan programme payments) 등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자의 순농가소득 대비 정부보조 비중은 2000년에 48%에서 2004년에 16%로 감소했다. 특별긴급 직접지불(Ad hoc emergency payments)은 계속해서 기타 정부보조와 정부지원 작물보험 등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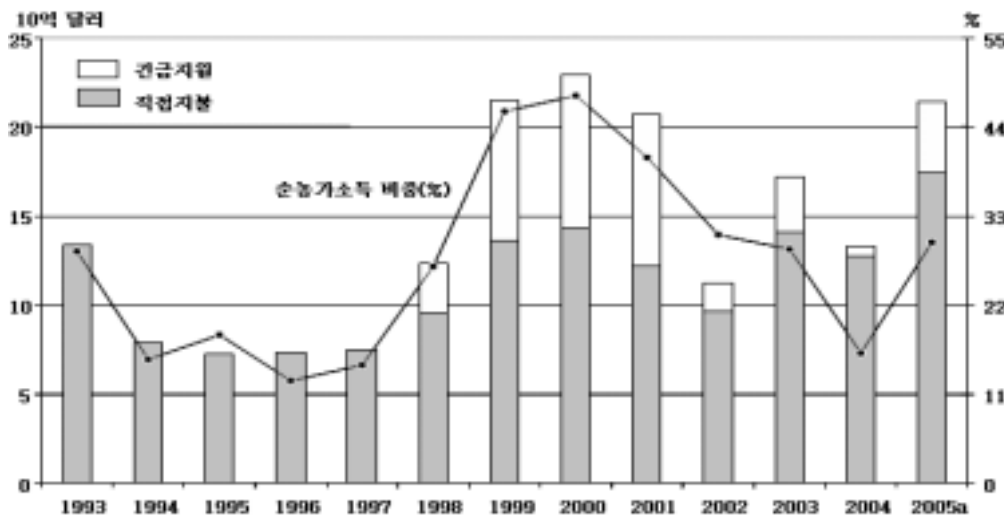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sh3615@krei.re.kr 02-3299-4369

2. 법률체계 및 정부보조

1938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과 1949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1949) 등은 미국의 품목별 농산물 가격 및 소득 보조를 결정하는 항구적인 법적 근거이다. 의회는 항구법령에 관한 규정을 보류시키거나 수정하는 법률을 정기적으로 제정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미 대통령이 서명한 2002년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이다. 또한 의회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별긴급지원 및 추가지원을 제공한다.

2004년 농업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은 133억 달러에 달했다. USDA의 잠정 전망치에 따르면, 2005년 정부의 직접지불은 21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증가 추이는 2004년 대비 경기조정 직접지불이 4배, 특별긴급 직접지불이 7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1 농업생산자에 대한 정부보조 현황, 1993~2005년



주 : 2005년은 전망치임.

자료 : USDAERS. <<http://www.ers.usda.gov/Data/FarmIncome/finfidmu.htm>>

생산자에 대한 정부보조 및 가격지지 효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OECD의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의 PSE는 356억 달러이며, 총농가수입 대비 PSE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은 15%에 달했다.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2004년 PSE는 465억 달러, 총농가수입 대비 PSE 비중은 18%로 높아져 1999년 이후 감소 추이가 다시 반전되고 있다. 2004년 총수입 대비 PSE의 비중이 가장 높은 즉, 가장 많은 보호를 받는 품목은 설탕, 밀크, 기타 곡물, 밀 등의 순이다.

WTO는 2003년에 미국의 면화에 대한 지원제도들이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패널을 구성한 후, 2004년 9월 패널보고서를 배포했다. 미국은 패널의 평결에 대해 상소했으며,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2005년 3월 대다수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는 상소보고서를 배포했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가격기준 보조조치들이 면화의 세계 시장가격을 상당히 왜곡하여 여타 WTO 회원국의 교역에 심각한 침해(serious prejudice)를 초래했다는 평결을 지지했다. 또한 면화와 대두 등의 비양허 품목에 대한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이 금지된 수출보조라는 평결을 지지했다.

2005년 7월 USDA는 패널과 상소기구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Step 2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면화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철폐,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의 법정 한도 폐지, 중장기 수출신용보증 관련 조치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USDA는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의 장기 운영비용과 손실을 충당하는데 부적절한 방식으로 운영했다는 WTO의 평결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 국경조치

WTO 통보자료에 따르면 2004년 농산물의 평균 양허세율은 증가세(ad valorem)와 비증가세(non-ad valorem)를 모두 포함하여 9.7%이었으며, 비농업 부분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저율수입물량(TRQ) 대상 품목은 195개이며, 이들 품목의 2004년 단순평균 쿼터밖 세율(out of quota tariff)은 49%, 쿼터내 세율(in quota tariff)은 9%에 달한다. 쿼터밖 관세의 91%는 비증가세인 반면, 쿼터내 관세는 28%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TRQ 물량의 일부는 특정 회원국에게 할당되며, 쇠고기, 특정 낙농품, 땅콩, 땅콩버터, 초콜릿가루, 담배 등 대다수 TRQ 대상 품목들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WTO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TRQ 물량과는 별도로 자유 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 무역대상국에게 추가적인 TRQ 물량을 배정했다.

낙농품과 설탕을 제외한 TRQ 물량은 선착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낙농품은 과거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업자, 원산국(country of origin)이 지정한 수입업자, 추천 방식 등에 따라 배정된다. 특정 품목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방식이 적용된다. 수입허가제(licensing system)도 시장접근물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동종 품목(like product)의 제조업자를 포함해서 특정 수입업자는 허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원당(raw sugar)의 TRQ 물량은 수입업자가 아닌 수출국에게 부여된다. 할당 자격증명서(certificate of quota eligibility)를 통해서 관리되며, 이 증명서는 USTR이 지정한 TRQ 물량을 근거로 USDA가 발행한다. 원당의 쿼터내 원당의 수입은 할당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가능하며, 이 증명서는 수출국에 의해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무료로 발행된다.

2004년 미국 농업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direct payment) 금액은 133억 달러로 이는 순농가소득(net farm income)의 16%에 달한다. 이는 순농가소득의 48%인 229억 달러에 달한 2000년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 USDA의 잠정 전망치에 따르면, 2005년 직접지불은 214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04년 수준에 비해 CCP가 4배, 특별긴급 직접지불이 7배 증가할 전망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WTO 농업협정문의 특별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 SSG) 규정에 따라 TRQ 대상 품목의 쿼터밖 할당량을 대상으로 수입가격이 발동가격(trigger price)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혹은 수입물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편 양고기 품목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상의 TRQ 대상 품목이 아닐지라도, 물량기준 SSG를 해당 품목에 적용할 수 있다. 2004년 1월 미국은 지난 2002년 2개월 동안 미국식 치즈의 수입물량에 대해 물량기준 SSG를 적용했다고 WTO에 통보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2003년과 2004년에 물량기준 SSG를 적용한 바 없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자동적으로 선적단위별(shipment-by-shipment basis)로 가격기준 SSG를 발동할 수 있고, 2003년과 2004년 동안 가격 기준 SSG는 쇠고기, 낙농품, 땅콩, 설탕, 식품조제품 등에 적용된 바 있다.

3. 국내보조 프로그램

미국이 유통연도 기준으로 최근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자료에 따르면, 현행 농업보조총액(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은 2000년에 168억 달러, 2001년에 144억 달러에 달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AMS 양허수준은 191억 달러이다. WTO의 감축대상이 아닌 허용보조(green box)는 2년 동안 매년 약 500억 달러를 제공했다.

WTO 회원국들은 최근 미국의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CoA)에 여러 가지 국내보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기된 문제들은 국영 농업 프로그램, 긴급사료지원 프로그램의 지출증액, 높은 수준의 면화·쌀·대두 등에 대한 특정 보조, 품목 불특정 보조의 증가, 작물 보험 프로그램의 정부보증 범위 등이다. 또한 여러 회원국들은 품목불특정 보조의 범위 아래 품목별 시장손실지원 직접지불의 분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의 최근 통보자료에는 2002년 농업법에 포함된 특정 프로그램에서 지원된 보조가 배제되어 있다. 미 농업부는 WTO의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미 농업부는 조정하기 이전에 조정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표 1 미국 직접지불 현황, 2001~2005년

단위: 100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생산자율계약 직접지불	4,040.4	3,499.8	-280.0	-3.9	0.0
고정직접지불	0.0	367.1	6,703.6	5,242.4	5,045.0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0.0	203.4	2,300.7	1,122.0	4,100.0
용자부족불	5,464.2	1,196.7	576.3	2,859.9	3,207.0
마케팅론 이득	707.7	459.7	198.1	130.4	457.0
순가치인증제	-	-	1,242.8	813.9	1,114.0
땅콩쿼터수매 직접지불	0.0	983.0	237.6	24.7	4.0
우유소득손실 직접지불	0.0	859.6	913.0	206.0	20.0
담배전환 직접지불	0.0	0.0	0.0	0.0	962.3
환경보전 직접지불	1,933.7	2,004.6	2,198.9	2,345.5	2,549.6
특별긴급 직접지불	8,508.1	1,616.2	3,111.3	557.2	3,915.0
기타 직접지불	73.3	46.1	6.8	5.4	6.0
직접지불 총액	20,727.5	11,236.3	17,209.2	13,303.6	21,379.9

주 : 1) 생산자율계약직접지불은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서 폐지됨.

2) 2005년은 전망치임.

자료 : USDA. ERS. <<http://www.ers.usda.gov/Data/FarmIncome/Finfidmu.htm>>

2002년 농업법에서 채승인 되거나 수립된 주요 국내보조 수단은 고정직접지불,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융자지원 프로그램 등이다<표 1>. 이들 직접지불은 2003~04년 농업생산자에게 지불된 전체 직접지불의 62%를 차지한다. 또한 미국은 긴급지원 및 작물보험 등을 통해서 농업부문을 지원한다.

3.1. 고정직접지불

직접지불(direct payment)은 2002년 농업법 채택 이후 생산자율계약 직접지불(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 payment)을 대체했다. 직접지불에 포함된 품목들은 밀,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면화, 쌀, 대두, 기타 유지종자, 땅콩 등이다. 고정직접지불은 현행 가격과는 무관하게 과거 경지면적과 단수에 근거하여 지원된다. 2002년 농업법은 2002~07년 단위당 기준에 직접지불 단가를 고정시켰다.

일반적으로 한 품목에 대해 직접지불을 받는 농업생산자들은 직접지불 대상 농지에 다른 품목의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반면, 과일, 채소, 야생미(wild rice)를 재배하거나 수확할 경우, 농업생산자들은 직접지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축소된다. 미 정부는 이러한 제약들이 1990년 이후 미국의 농가 프로그램의 특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3.2.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CCP의 대상 품목은 직접지불과 동일하다. CCP도 과거 경지면적과 단수에 따라 지불되는 반면, 현행 가격과 연계되어 있다. CCP는 융자단가(loan rate)나 계절 평균가격과 고정직접지불 단가의 합계 가운데 큰 것이 2002년 농업법에서 설정된 해당 품목의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낮을 경우 지불된다.

CCP의 지원액은 목표가격과 융자단가나 계절 평균가격과 고정직접지불단가의 합계 가운데 큰 것 간의 차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CCP 대상 경지에 과일, 채소, 야생미 등을 재배할 경우 농업생산자는 CCP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축소된다.

3.3. 용자지원 프로그램

용자지원 프로그램은 밀, 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대두, 기타 유지종자, 설탕, 땅콩, 모헤어, 양모, 꿀, 병아리콩, 완두 등의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생산자들은 품목별 혹은 마케팅지원 용자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을 담보로써 신청함으로써 정부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용자액은 2002년 농업법에서 고정된 생산량 단위당 미 달러화로 산출된 용자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장가격이 용자단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업생산자들은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에 담보로써 약정한 작물을 양도함으로써 용자금을 변제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검토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변제과정에서 CCC는 해당 작물을 시장에서 이탈시킴으로써 시장가격 지지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생산자들은 마케팅론에 따라 상환단가(repayment rate)로 정부의 용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 상환단가는 쌀과 면화에 대한 조정된 세계 시장가격과 기타 품목에 대한 지역 시장가격 가운데 낮은 가격이 된다.

생산자들은 용자부족불(loan deficiency payment)을 통해서 마케팅론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수준은 생산단위 당 미 달러로 산출되며, 용자단가와 용자 상환단가의 차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용자부족불 아래에서는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2006년 2월 초 의회는 2006년 6월부터 사용자 유통 인증제(user marketing certificate)와 면화에 대한 특별 보조 규정인 'Step 2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 면화 사용자와 수출업자들은 특정 유통조건이 성립할 때 직접지불을 받았다.

3.4. 긴급지원 및 보험 프로그램

농민에 대한 특별긴급지원 직접지불은 여타 직접지불을 보완한다. 또한 미 정부는 자연재해와 가격의 불규칙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가보험 지원프로그램은 수정된 연방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에 따라 제공되며, 100개 이상의 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생산자들은 단수나 수입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생산자들은 실제 단수 혹은 수입이 가격하락이나 생산감소로 인해서 목표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직접지불을 받게 된다. 해당 보험 프로그램은 재해위험 적용범위(catastrophic risk coverage) 내에서 지원되며, 이에는 100달러의 행정비용이 수반된다. 50%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재해위험 적용범위 내의 해당 생산자들은 보험가입 대상 작물의 시장가격의 55%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을 받는다. 생산자들은 적용범위가 넓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보전되는 보험료는 감소한다. 미 농업부는 농업 보험을 판매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을 보전해 줌으로써 인수비용을 분담하고, 이들 기업의 행정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2004년 이들 보험에 지원된 보조금은 25억 달러로, 전체 보험료의 60%에 해당한다. 총 작물보험 지출액은 1995~2003년 동안 연평균 14% 상승했다.

3.5. 기타 지원프로그램

2004년 담배개혁법(Fair and Equitable Tobacco Reform Act of 2004)은 2005년을 시작으로 모든 생산쿼터와 기타 가격지지제도를 폐지했다. 동 법률은 담배쿼터 생산자에게 보상지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담배 수입업자와 생산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설정하고 있다.

CCC는 동 법률에 의한 연간 예상 지출액과 부과금 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수입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부담금을 결정한다. 보상지불은 과거 쿼터 할당량과 생산수준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10년 분할하여 지불된다. 동 법률에 따라 지원될 예상 지출액은 1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2년 농업법은 2003~05년 동안 경질백색밀(hard white wheat) 생산자에 대한 인센티브 직접지불을 제정하고 있다. 인센티브 단가는 부셸 당 0.2달러이며, 에이커 당 12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인증 받은 종자를 심은 해당 면적에 대해서 에이커 당 2달러의 추가지불이 제공된다.

3.6. 기타 프로그램

1937년 농산물유통협정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of 1937)은 농업 부가 구속력있는 유통명령제(marketing order)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유통명령제의 대상 품목은 과일, 채소, 특용작물, 우유 등이다. 유통명령제는 특정 지리적인 영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생산, 등급설정, 포장, 수송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취급업자들로 제한된다.

유통명령제는 최소가격을 설정하고, 생산수준을 고정하며, 해당 품목의 저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등급, 규격, 품질, 기한 등의 최소한의 품질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2004년에 33번의 유통명령제가 발효된 바 있다.

1937년 농산물유통협정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of 1937)은 수입 농산물이 유통명령제에 따라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 설정된 요건과 동일하거나 비교 가능한 등급, 규격, 품질, 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수입 농산물은 아보카도, 가공용이 아닌 대추야자 열매, 개암, 서양자두, 건포도, 호두 등이다.

해당 농민들은 2002년 무역법의 일환으로써 채택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10,00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품목의 연

평균 국내가격이 이전 5개년 평균 국내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지원된다. 동종 품목 혹은 직접 경쟁 품목의 수입급증은 가격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인식된다. 현금지불은 생산단위 당 이뤄지며, 지불단가는 이전 5개년 연평균 국내가격의 80%와 최근 연평균 국내가격 간의 차액의 50%에 해당한다. 2004년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액은 1,100만 달러에 달하는 한편, 2003년 지원 실적은 없다.

4. 수출 보조, 신용, 보험, 보증

4.1. 수출보조

미국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보조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2000~01년 이후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양허한도는 연간 5억 9,400만 달러에 달한다. 무역검토 기간 동안 미국이 제출한 수출보조 통보실적에 따르면 2002년 수출보조는 3,150만 달러에 달한다. 수출보조 지원을 받는 품목은 버터 및 버터오일, 탈지분유, 치즈 등이다.

미국의 주요 수출보조는 수출진흥 프로그램(Export Enhancement Program, EEP)과 낙농수출인센티브 프로그램(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DEIP) 등을 통해 이뤄지며, 2002년 농업법에 따라 2007년까지 확대되었다. 수출보조는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현금의 형태로 지불된다. EEP 대상 품목은 밀, 밀가루, 쌀, 냉동 가금육, 보리, 맥주맥 등이며, DEIP의 대상품목은 분유, 버터지방, 치즈 등이다.

미국 정부는 1,500만 달러에 달하는 냉동 가금육의 수출을 제외하고 1995년 이후 EEP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2003년 10월~2004년 9월 동안 DEIP의 현금 지원금은 270만 달러 미만의 수준이었으며, 이 중에서 2/3은 탈지분유 수출에 대한 지원금이였다.

4.2. 수출신용, 보험, 보증

미국은 단기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인 GSM 102, 중장기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인 GSM 103, 공급자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 등 3가지 주요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 중반, GSM 102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GSM 103의 신청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CCC는 GSM 102와 공급자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자금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대신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미 농업부는 2005년 7월부터 GSM 102와 공급자 신용보증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위험에 근거한 부담금 구조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했다. GSM 102의 신용보증기간은 90일~3년으로 수출농산물에 대해 신용을 보증한다. CCC는 원금의 98%와 이자의 일정 부분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며, 시장잠재력을 근거로 대상 농산물의 적격성을 판단한다. 수출업자는 보증액을 근거로 산출된 비용을 지불하며, 이 비용은 보증대상 거래액의 1%의 범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공급자 신용보증 프로그램은 수출업자가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수입업자에게 제공한 단기금융에 대해서 CCC가 신용보증을 해주는 정책으로 신용기간은 180일 초과할 수 없다. CCC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의 65%만을 보증한다.

또한 CCC는 신흥시장의 저장, 가공처리, 출하시설 등 농업관련 설비를 향상시키는 공산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보증하는 시설보증 프로그램(Facility Guarantee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공산품과 서비스 수출의 신용보증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제공된다. 미 정부는 CCC가 1997년 이후 1건의 신용보증을 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수출신용보증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수출액은 2003년에 32억 달러, 2004년에 3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04년 총액 가운데 80%는 GSM 102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5. 식량원조

2004년에 미국은 세계 식량원조의 56%(물량기준)을 제공했다. 2003년 10월~2004년 9월 동안 제공된 식량원조 총액은 11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의 식량원조는 공법 480(P.L.480), 국제식량원조 프로그램(Food for Progress, FFP), 1949년 농업법의 Section 416(b), McGovern-Dole 국제급식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된다.

식량원조의 70%는 공법 제480조를 통해서 2003년 10월~2004년 9월 동안에 제공되었으며, 14%는 FFP를 통해서 제공되었다. 공법 480은 제1조(title I)에 긴급 상황이나 평상시 해외의 요구에 의해서 식량을 기부하며, 제2조(title II)에 개도국에게 유상으로 식량을 기부하고나 장기유자로 식량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에 식량원조의 65%는 제1조에, 35%는 제2조에 따라 제공되었다.

FFP는 식량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에게 미국의 식량을 구매하거나 기부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ection 416(b)는 CCC가 보유한 잉여농산물을 원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식량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식량으로 인해서 수혜국의 동일 혹은 동종 품목의 유통, 생산, 가격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Section 416(b)와 제2조(title II)의 평상시 규정에 따라 기부된 식량의 일정부분은 현금화, 즉 수혜국에서 판매될 수 있다. 1998년 10월~2000년 9월 동안 제공된 식량원조의 경우 30%는 공법 480의 제2조, 40%는 Section 416(b)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대다수 WTO 회원국들은 국내시장에 대한 현금화 요건의 효과나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의 사용 문제 등 미국의 식량원조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협상논의 과정에서 미국은 식량원조가 잉여농산물 처분과 협의 의무규정에 관한 FAO 원칙(FAO Principles of Surplus Disposal and Consultative Obligation)에 따라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식량원조 관련 법령과 규정들이 현금화된 농산물을 지역시장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pr_e/tp261_e.htm